

2003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1. 자기인증제 도입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할 때 안전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확인하는 형식승인제가 폐지되고 제작자 등이 자동차의 생산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안전성을 스스로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도가 2003년부터 도입된다.

이전의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었던 형식승인제와는 달리 자기인증제도 도입으로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교부는 소비자 불만을 전문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자동차 제작결함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최근 운영에 들어갔다.

2. 자동차 안전강화

자기인증제 도입에 따라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돼 리콜(제작결함 시정명령)제도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외국에서 제작결함의 시정사례, 자체 무상점검과 수리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건교부 장관은 제작자 등이 판매한 자동차 안전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조향도 신설돼 소비자들이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3. 정비시 중고부품 사용 고지

자동차 중고부품 중 원동기 등과 같이 안전과 관련된 부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이 부품을 쓸 수 있는 차종과 주행거리, 공급자 등에 관한 정보를 라벨 형태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중고부품 구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4. 중고차 품질보증제 도입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성능을 허위로 알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하반기부터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도 새 차를 살 때처럼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돼 일정기간 하자수리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 차량번호 선택제 실시

신규등록과 등록번호 변경, 명의이전, 말소 등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과거 관할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동일 시·도내에서는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등록번호 변경사유도 확대돼 홀·짝수변경과 번호판분실때도 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신규 등록시 무작위로 선택된 등록번호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현재 방식 대신 2개의 등록번호를 추출해 그 중 하나를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6. 경유 및 LPG 특소세 인상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인 특소세 상향 계획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경유는 기존 234원/l에서 276원/l, 수송용 LPG는 226원/kg에서 323원/kg로 각각 특소세가 인상된다.

7. 자동차 등록 간소화

자동차 변경등록 혹은 이전등록시 해당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상당부분 간소화된다.

8. 속도위반 단속강화

규정속도에서 40km를 초과해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벌점 30점 외에 별도의 범칙금(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이 부과된다. 20~40km 이하 속도초과 기준(승용차)도 새로 정해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고, 20km 이하 속도초과 차량은 현행대로 벌점이 없는 대신 범칙금 3만원이 적용된다.

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이하	3만원	4만원
20~40km이하	벌점 15점	벌점 없음
40km초과	벌점 없음	벌점 없음

9. 교통위반 신고비용 폐지

2002년 6월 1일부터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차량의 개편과 함께 2001년에 약 83억원, 2002년에 약 45억원 정도의 예산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종합에서 보상금 예산이 전액 삭감돼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이 중단된다.

10. 운전면허교육 강화

7월부터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수험생이 기능시험을 보기 전에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한다.

11. 대중교통수단 안전벨트 의무규정 폐지

택시나 고속버스가 도로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 운전사뿐 아니라 조수석까지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한 의무규정이 사라진다.

12. 보험 표준약관 사망위자료 인상

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된 사망위자료 금액이 인상돼 사망자가 20세에서 60세인 경우는 4,500만원으로 또 그 밖의 연령은 4,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연령	개정 전	개정 후
20세 이상 60세 이하	3천2백만원	4천5백만원
60세 초과	2천8백만원	4천만원

8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 종전에는 1년 미만 차량보다 16%의 환경부담금을 더 냈지만 금년부터는 12%만 더 내면된다

14. 불법연료 · 공회전 규제 강화

하반기부터는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자동차 연료의 제조 · 공급 · 판매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 대상에 오른다.

제조 · 공급 · 판매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서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에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